

## 2000년대 국제식품무역에 관한 회의보고 : 과학에 근거한 결정, 조화, 동등성 및 상호인정

(Conference on International Food Trade Beyond 2000 : Science-Based Decisions, Harmonization, Equivalence and Mutual Recognition)

조 미 영 /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금번 회의는 1991년도 “FAO/WHO 식품규격, 식품중 화학물질 및 식품무역회의” 이후 WTO, FAO와 WHO가 공동으로 10년만에 개최한 회의로서 “2000년대 국제식품무역: 과학에 근거한 결정, 조화, 동등성 및 상호인정(Conference on International Food Trade Beyond 2000: Science-Based Decisions, Harmonization, Equivalence and Mutual Recognition)”이라는 표제 아래 1999년 10월 11일~10월 15일, 호주 멜버른(Sofitel Hotel)에서 개최되었다. 동회의에는 75개 회원국과 25개 국제정부기구 및 비정부기구로부터 총 353명이 참석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식품교역시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CODEX 국제

식품규격위원회의 역할, FAO/WHO 국제기구의 역할, 회원국 정부에게 향후 약 10년간 전반적인 전략사항을 권고하였으며 의제마다 연사의 발표이후 각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권고사항을 수정 및 작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합의된 권고사항은 부록 1, 2와 같다.

회의의제는 표1과 같이 식품규격, 식품중 화학물질 및 식품무역에 관한 1991년도 FAO/WHO합동회의의 대응검토,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식품무역과 SPS와 TBT 협정시행, 소비자보호와 무역측면에서 식품품질 및 안전성법령 설정과 의사결정근거, 과학에 근거한 결정, 조화, 동등성 및 상호인정, 기술지원등에 관해 논의되었다. 의제별 토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회의 의 제

의제번호	회의 의 제 명	문서 번호
의제 1	회의 개최	
의제 2	임원 선출	
의제 3	의제 채택	
의제 4	서 언	
	a) 식품규격, 식품중 화학물질 및 식품무역에 관한 1991년도 FAO/WHO합동회의의 대응검토 b)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ALICOM 99/2 ALICOM 99/3
의제 5	식품무역과 SPS와 TBT 협정시행	
	a) 식품품질 및 안전성사항등 식품무역에 관한 현상황	ALICOM 99/4
	b) SPS/TBT 협정적용검토	ALICOM 99/5
	c) 개발도상국의 SPS/TBT/Codex 준수검토	ALICOM 99/6
의제 6	소비자보호와 무역측면에서 식품품질 및 안전성법령 설정과 의사결정근거 : 식품품질 및 안전성법령의 목적	
	a) 소비자보호-FAO/WHO 식품법모델/관리절차	ALICOM 99/7
	b) 식품법령 및 식품품질/안전성 조치를 CODEX 규격, 지침서 및 권고사항과의 조화	ALICOM 99/8
	c) 식품품질 및 안전성확보 : 식품유통과정중 품질관리 (업체, 정부, 소비자, 학계역할)	ALICOM 99/9 ALICOM 99/10 ALICOM 99/11 ALICOM 99/12
의제 7	향후 전망	
	a) 신 종 기술 :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확보	ALICOM 99/13
	b) 최근 문제점 : 화학물질/생물학적 제제	ALICOM 99/14
	c) 최근 문제점 : 알레르겐	ALICOM 99/15
	d) 영양, 환경 및 식품생산문제	ALICOM 99/16 ALICOM 99/17 ALICOM 99/18
의제 8	과학에 근거한 결정확보	
	a) 전문가자문과 위해분석 b) 적정보호수준결정 - 역치규정적용	ALICOM 99/19 ALICOM 99/20
의제 9	조화, 상호인정 및 동등성	
	a) 조화/동등성/상호인정 b) 표시 및 영양사항	ALICOM 99/21 ALICOM 99/22
의제 10	기술지원	ALICOM 99/23 ALICOM 99/24
의제 11	회의결론 및 권고사항	
의제 12	보고서 채택	

※ 회의의제문서는 [www.fao.org/WAICENT/FAOINFO/ECONOMIC/ESN/austral/austra-e.htm](http://www.fao.org/WAICENT/FAOINFO/ECONOMIC/ESN/austral/austra-e.htm)에서 입수할 수 있음

# 1. 의제별 논의요약

금번 회의진행은 Michael J. MacKellar (호주) 의장이 주재하였으며 부의장으로는 Ron Burke(캐나다 - 북미지역), Eve Kasirye-Alemu(우간다 - 아프리카지역), George Mansour(레바논 - 중동지역), Grant Meekings(영국 - 유럽지역), Cham Prasadh(캄보디아 - 아시아지역), Gonzalo Rios(칠레 - 남미 및 카리브해지역)등이 선출되었다.

## 1. 1991년도 식품규격, 식품중 화학물질 및 식품무역에 관한 FAO/WHO 합동회의에 대한 대응(의제 4).

John R. Lupien(FAO 식품영양부(Food and Nutrition Division))는 금번 회의는 40년전부터 시작된 회의중의 하나로 첫 번째 회의였던 1962년 FAO/WHO 합동식품회의에서는 FAO/WHO 합동식품규격프로그램을 설립하였고 이때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설립을 논의하였음을 설명하였다. 1955년 식품첨가물에 관한 FAO/WHO 합동회의는 JECFA의 성공적인 진척을 이루었고 1991년에는 GATT와 공동으로 개최된 회의로서 다자간 무역협상과 연계되어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여러 지침이 작성되었고 그 결과 식품의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분과위원회(CCFICS)를 설립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1991년도 회의의 업적과 정부, FAO, WHO,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UR 협상 권고사항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하는 선언적 발표였다.

## 2.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제 4)

CODEX 사무국 직원인 Dr. A.W. Randell (Senior officer, Joint FAO/WHO Food Standards Programme)는 1991년도 회의이후 CODEX의 경과와 SPS와 TBT 협정 발효에 따라 CODEX의 위상 변화를 설명하였다. 두 협정의 의미가 명백히 이해될 때까지 CODEX 회원국은 규격 설정이 조심스러워졌고 그동안 여러 사건이 WTO

에서 처리되면서 국가수준에서는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밝혔다. 23차 총회결과 합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특별작업반 설립이 가능케 되었으며 국제비정부기구의 참여도 확대되었다. CODEX는 향후 지속적으로 식품규격을 설정하며 품질과 안전성 측면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하며 특히 식품안전성을 집중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CODEX 작업성과에 대하여 감사를 표명하며 현재 진행방향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하였고 식품품질 및 안전성, 표시 등 CODEX 규격은 FAO/WHO 합동식품규격프로그램의 목표와 SPS 협정 및 TBT 협정 목표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WHO의 경우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더 많은 작업에 참여하며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3. 식품무역과 SPS와 TBT 협정시행 (의제 5)

### 가. 식품품질 및 안전성사항등 식품무역에 관한 현상황

Mr. Kevin Hammer(FAO자문관)는 SPS 협정과 TBT 협정시행에 따라 회원국의 식품무역과 관련 식품품질과 안전성 규격과 법령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들어 식품안전문제는 소비자와 정부에게 가장 최우선순위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성분, 관능 및 영양소 관련 식품품질사항도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위해서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 권고사항

- 전세계적으로 식품품질과 안전성 현 상황과 범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FAO와 WHO는 회원국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야하며 식품에 기인한 질병발생과 식품안전관리 소홀 사유에 관한 확인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 FAO와 WHO는 전세계적으로 식품 관련 생물학적, 화학적·물리적 위험, 신종 위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명확

히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가협의체 소집을 검토하며 향후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규격, 규범, 지침서 및 권고사항을 설정할 때 위해분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정부는 수입시 부적합되거나 보류된 제품정보를 전자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그 정보는 추후 수출국의 후속 조치로서 활용되어야 하고 사전에 타국의 수입식품의 문제를 경고할 수 있어야 한다. FAO, WHO 및 CODEX는 국제무역시 위험가능식품의 유무에 대하여 정보교환하기 위한 국제제도 도입필요성, 가능성, 실제조건을 연구해야 한다.

#### 나. SPS/TBT 협정의 적용검토

Ms. G. Stanton(WTO 자문관)는 WTO는 1948년이래 국제무역에 관한 규정이었다던 GATT를 대체한 새로운 협정이었던 1995년 발효된 후 134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고 SPS 협정과 TBT 협정은 CODEX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TBT 협정이란 정부가 허위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합법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수기술규정과 임의규격과 적합성평가절차를 인정하고 있으며 비차별, 조화, 불필요한 무역장벽최소화, 동등성 또는 상호인정 및 투명성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SPS 협정은 정부가 무역시 국민건강보호를 목표로 식품안전과 동식물건강분야를 규정하고 있는 협정이며 건강보호수준이란 무역제한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에 관한 CODEX 규격, 지침서 또는 권고사항을 적용하든지 위해평가에 근거한 기준이 되어야 하며 여타 원칙과 규정은 TBT 협정과 동일함을 소개하였다.

3년간 두 협정은 잘 시행되어왔으나 몇 가지 우려사항, 즉 국제규격사용, 합리적인 선에서 무역제한조치시행 최소화, SPS 기준의 과학적 결정, 개도국의 규격설정 참여,

기술지원 증가, 시험절차 최소화(TBT), 모든 표준화기구의 모범실행규범고수 등이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다. 개발도상국의 SPS/TBT/CODEX 준수검토

H.E. Cham Prasidh(캄보디아, 통상부장관)는 현재 국제식품무역은 수세기동안 진행되어 왔고 상업적 거래에서 이제는 수출입국간의 무역이 되면서 정부간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 발전되어 왔고 개도국은 국민의 보건복지면에 우려하고 있으며 생산, 가공, 유통 및 식품의 판매가 소비자 보호와 무역증진을 기할 수 있는 조치여야 함을 인정하나 개도국은 자금경쟁력과 관리비용이 부족하고 전문가와 시설이 부족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을 표명하였다.

#### \* 권고사항

- 효율적인 식품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은 먼저 국가 수준에서 최우선순위 정치정책으로 본 제도의 경제적·보건상 혜택을 아는 것이 시급하다.
- FAO, WHO와 WTO는 개도국에게 국가 식품관리전략 개발차원의 지원 여부를 검토하며 그 지원을 통해 국가당국에서 식품관리제도의 보건·경제적 시행과 WTO SPS/TBT 협정 시행과 CODEX 작업의 참여를 최고 정책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 국가는 식품의 국제간 교역시 윤리규범을 고수하여 개도국에게 수출하는 제품을 국제 및 국가규정에 일치시킨다.
-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식품안전규격을 타협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CODEX 규격 및 관련 기준을 설정하고 결정할 때 기반구조, 자원, 기술 및 법률능력을 검토해야 한다. CODEX 규격 및 관련 기준이 개도국의 수출시 불필요하거나 부정당하거나 차별적인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 4. 소비자보호와 무역측면에서 식품품질 및 안전성법령 설정과 의사결정 근거(의제 6)

##### 가. 소비자보호 - FAO/WHO 식품법모델/관리절차

Dr. E. Boutrif(Senior Officer, Food Quality and Consumer Protection Group)는 국가 식품관리제도에서 식품법령의 역할을 소개하였으며 식품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관한 기술규정 설정보다 소비자보호 기본원칙에 근거한 기초 식품법 설정을 권고하였다. 더 나아가 WTO 협정에 따라 호혜주의, 형평성, 동등성 및 상호인정에 관한 원칙 등이 식품법 및 규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 나. 식품법령 및 식품품질/안전성 조치를 CODEX 규격, 지침서 및 권고사항과의 조화

Mr. Ian Lindenmayer(Australia New Zealand Food Authority)는 WTO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이 자국의 식품법령을 국제규격, 지침서 및 권고사항과 조화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점에서 CODEX 규격은 SPS/TBT 협정의 무역분쟁해결시 국제참고기준으로서 그 중요성이 상승되어 왔고 또한 ANZFA에서 실행하는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6단계를 소개하였다.

##### \* 권고사항

- CODEX 의사결정서 과학의 역할과 고려해야 할 기타 원칙 요소범위에 관한 원칙과 식품안전성 위해평가역할에 관한 원칙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CODEX 위원회에 다음사항을 권고한다.
  - 국제규격개발시 위해분석에 관한 공동작업 추진 및 회원국에서 국가 규제조치 개발과 검토시 해당 방법론 채택 및 적용 지원
  - 국내 및 국제규격을 개발시 사용할 적정 영향분석절차를 위해관리지침

- 에 포함시키기 위해 공동작업추진
- 현행 CODEX 규격을 위해분석과 위해관리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검토하고 갱신함으로써 불필요한 무역장애요소 확인제거

##### 다. 식품품질 및 안전성확보 : 식품유통과정중 품질관리(업체, 정부, 소비자, 학계역할)

##### A. 업체역할

Mr. M. Strauss(Monsanto Company)는 식품업체가 가공식품의 일차 주요 공급업자로서 식품의 특징, 성분,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정보제공자이며 업체는 프로그램, 학계연구, 기술이전(technical transfer)의 경제적 지원자로서 CODEX와 WTO 목적달성이 중요한 현상황에서 장기간 개발시야를 가져야 하나 투자와 기술장벽, 투명성 미비 또는 개발에 따른 경제적 압박 등의 도전을 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기술이전이 필요한 영역과 최선의 관행의 적용은 시장이 작고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가장 복잡한 영역이기도 하므로 개발경쟁력 확보, 빈민해결, 좋은 품질과 안전한 식품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적 성장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업체는 좋은 품질의 영양이 풍부하고 건전한 식품과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 건전하고 일관되며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업체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시 불확실성은 위해확률의 과학적 평가에 의해 다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 \* 권고사항

- 식품업체는 FAO/WHO와 협력하여 최선의 관행과 기술이전을 통해 농산물과 수산물 생산유지와 증진을 기하여야 한다.

##### B. 정부역할

Dr. Abalaka(Standards Organization of Nigeria)는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은 정부, 업체 및 소비자의 공동책임이지만 정부는 법을 규정하고 집행하는 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안전하

고 전전한 식품을 확보하는 과정도 정부의 책임이며 식품법과 법령은 효과적인 식품관리 기반구조 구축에 합법적인 기초를 제시하며 식품법령은 다양하고 거대한 산업의 최소규격을 규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전전한 섭취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며 업체에게는 가공식품으로 허용가능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정부의 중요한 책임은 건강위험과 상업상 허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식품관리제도를 통해서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기한 책임은 한개 부처 이상이 관여되어 있다. 정부는 양자·다자간 국제조약의무가 있으며 SPS 및 TBT 협정이 식품관리영역과 가장 밀접한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개도국은 정보기술제도를 개선하면서 기술위원회와 식품생산, 식품법령 및 안전성을 논의하는 다양한 위원회에 더욱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국가식품규제제도를 강화하고 정부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찰당국에게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CODEX 규격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 SPS 및 TBT 협정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 \* 권고사항

- 국가규격은 식품품질과 안전성의 전전한 관리를 위한 기초라는 점에서 가능한 한 일반적으로 국제규격과 국가건강 및 영양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 정부는 국내·국제식품규격을 설정할 때 투명하며 최선을 다하기 위해 소비자, 생산업자 및 대표기구의 역할을 명백히 인정해야 한다. 동일하게 모든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CODEX 국가협의체를 설립하여야 한다.
- 개발도상국은 정보기술제도향상을 위한 경비를 확대하고 식품생산, 규정 및 안전 관련 기술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국의 식품규제제도의 역량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전을 받아들여야 한다.
- 개발도상국정부가나 국제기구는 단계별 계획하에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지원 결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가 가능

하여야 하며 지원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 C. 소비자의 역할

Mr. E. Groth(Consumers Union of US)는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를 대표한 기구로서 국제식품정책토론에 참여하지 못했었고 대부분 업체와 정부전문가가 결정한 내용이 소비자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문제의 해결은 적절한 정보 전달 및 공개와 투명성이라고 보며 이점에서 위해정보전달이 중요하고 국가수준에서 뿐만아니라 CODEX, WTO의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비자단체는 상기한 의사결정이 과학에 근거해야 하며 이외의 합법적인 요소를 확인하여 적용원칙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예방원칙과 적용조건에 대하여 CODEX 내에서 가장 최우선순위로 검토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기호는 표시사항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합법적인 시장원칙이며 충분하고 바른 정보는 소비자의 식품선택 습관으로 인한 위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예, GMO 식품).

#### \* 권고사항

- 정부와 국제기구는 전세계의 모든 지역의 소비자기구가 식품정책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를 강구하여야 하며 신탁자금, 보조금, 및 기타 자금제도를 찾아야 한다.
- FAO, WHO, 정부기관 및 업체는 식품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에 대해 대응하고 식품정보전달이 상호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웹사이트나 전통적인 매체를 사용하여 시민, 소비자단체 등에서 정부제안에 대응하고 제안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야 한다.
- 소비자단체는 국가 및 국제기구와 조정능력을 향상시키며 식품품질, 안전성 및 무역문제에 관한 전문가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D. 학계의 역할

Dr. Kraissid Tontisirin(Institute of Nutrition Thailand)는 학계는 식품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전략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연구소는 식품과학기술연구를 통해 식품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분석과 자문역할을 해야 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식생활 행태와 영양소 및 기타 성분의 섭취량 결정을 위한 국가 모니터링 및 감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을 덧붙였다. 식품 품질과 안전 교육은 국가식품관리교육 정책의 중요한 요소로서 연구사업 수행시 국가식품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 권고사항**

- 회원국 정부는 관련 식품안전연구를 지원해야 하며 식인성(foodborne : 이하 식인성이라 함) 보고 등 감시제도를 강화하고 협력연구로 위해분석 자료가 전반적으로 수용되도록 해야 한다.
- 회원국 정부는 전문정보, 제도, 연구 결과를 개도국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위생적인 식품생산을 위한 훈련 뿐만 아니라 식품당비와 위험관리를 위해 정부 연구소, 학계 및 업계를 조정해야 한다.
- 연구소, 업체 및 이해당사자는 식품과학기술협회 설립을 장려하고 위해 분석 자료에 관한 지역, 국제네트워크를 설립해야 한다.

**5. 향후 전망(의제 7)**

**가. 최신 기술 :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Mr. D Taeymans(Director, CIAA, Belgium)는 농장에서 다양한 기술적용(다양한 선진기술업무, 경작관행개선, 관개 및 사료의 이용, 식물보호기술)으로 개발도상국의 동·식물의 생산량증가가 돋보임을 소개하였다.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기술이 이용되고 있으며, 식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영양학적인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공 및 포장의 신기술이 이용되고 있으며 HACCP 과 같은 품질보증제도와 모범제조관행을

이용은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생산확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권고사항**

- 국제기구는 민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기술과 모범생산관행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지식 증진과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 CODEX 규격집은 위해분석에 근거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식품안전법령의 적용을 위한 지침서로 개발되어야 한다. FAO, WHO, 정부는 신기술과 가공식품의 안전성평가를 다루기 위한 국제정부간 포럼을 설립해야 한다.

**나. 최근 문제점 : 화학물질/생물제제**

Dr. T. Van de Venter(Department of Health, Pretoria, South Africa)는 전세계적으로 국민건강문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식인성질병이며 건강상 경제적인 측면에서 관리필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현재 식인성문제의 발생은 국민에게 가장 일반적인 문제로 검토되고 있고 여러 방법으로 전달되거나 지역적으로 빠르게 증가되고 있으며 새로운 지식증가 또는 질병인자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방법개발로 그 문제를 확인하고 있다.

**\* 권고사항**

- 식품에 기인한 문제발현에 관하여 세계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시행하며 정보이용과 교육이 해당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다.
- FAO와 WHO는 화학적이며 생물학적 문제에 대하여 분석 및 시료채취 방법을 결정하며 전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는 전세계적으로 제안된 국제정보체계를 통해 배포되어야 한다. FAO, WHO와 기타 해당기관은 분석 및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매뉴얼 및 훈련을 지속하고 강화해야 한다.

- 해당 국제기구는 타회원국의 도움을 받아 국가를 대상으로 적절하고 효율적인 식품관리제도를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동시에 최소 또는 기본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위해분석의 세가지 요소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효율적인 국가식품관리제도를 입안하고 시행할 수 있는 조치가 되도록 조정하고 강화한다.
- 회원국은 강력하고 가시적인 WHO 식품안전프로그램을 지지해야 한다. 특히 FAO와 WHO 및 국제기구는
  - 1) 식품안전전문가로 구성된 전략회의를 소집하여 ① 전세계적으로 식품안전개선을 위해 5~10년간 공동목표를 확인하고, ② 전세계 식품안전문제에 관한 WHO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장기간 전략계획을 제안한다. 본 회의는 (i) 식인성질병의 병인학(etiology)과 역학 등과 모니터링자료를 사용하여 위해평를 실시하거나 (ii) 식품오염물질에 관한 예방조치 및 (iii) 교육에 관한 문제를 논의한다.
  - 2) 미생물위해평가에 관한 새로운 전문가조직구성 등 전문가조직, CODEX 사무국을 후원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며 특히 개도국의 식품안전문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CODEX 역할을 강화한다.
  - 3) 개도국내에 기술협력활동을 증가함으로써 특히 식품관련 건강상 위해에 대처하기 위한 회원국의 역량강화; 식품에 기인한 질병의 국제적인 부담을 추정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국민건강 감시제도를 조정한다

#### 다. 최근 문제점 : 알러르겐

Dr. S. Taylor(University of Nebraska)는 소비자가 알레르기와 인톨러런스(intolerance)에 늘 노출되어 있으며 개개인에

게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규제당국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은 부분으로 새롭게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1999년 총회때 과민증(hypersensitivity) 유발식품과 성분목록을 채택한 바 있으며 향후 JECFA에서 제공한 자문을 토대로 식품표시분과 위원회에서 본 사항을 검토하게 될 것이며 1995년 FAO 식품알레르기에 관한 기술협의(1995 FAO Technical Consultation on Food Allergies)에서 25% 규정을 5%로 낮추어 표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CODEX에서도 채택하였다.

#### \* 권고사항

- 정부는 1999년 총회시 채택한 가장 일반적인 알러르겐 물질을 채택할지 여부와 표시규정에서 해당식품과 제품에 이사항을 항상 표시한다라고 규정할지 또는 향후 확인된 식품과 성분목록을 표시규정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한다
- 식품 알레르기와 인톨러런스(intolerance) 등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 문제에 관해 JECFA에 자문할 수 있는 FAO/WHO 공동으로 구성된 전문가패널을 구성해야 한다.

#### 라. 영양, 환경 및 식품생산문제

##### A. 문화와 소비자습관의 변화

Professor. B. Trail(University of Reading)는 식품섭취는 30년간 증가되어 왔으며 특히 아시아지역에서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고 국가경제와 소득수준이 달라지고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 문화적인 요소에 의해 식생활 행태도 변화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식품의 품질은 소비자의 식품선택시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므로 무역자유화의 장벽은 소비자의 욕구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며 정책결정자는 소비자를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 권고사항**

- 생산업자와 정책결정자는 소비자의 식품선택특징에 관해 교육을 받고 알고 있어야 한다.
- 타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소비자의 우려와 행동을 연구하고 표시유형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평가하기 위하여 소비자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 식품공급의 품질과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 신뢰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농산물제도의 신탁제도 마련에 최우선순위로 합의한다.

**B. 신중기술과 문제에 관해 과학에 근거한 의견교환**

Dr. D. Arnold(BGVV, Berlin)는 식품손실감소, 유통기한 확대, 식품의 품질과 건전성과 안전성 및 영양증진을 위해 과학기술은 중요하며 현재 신중기술 즉 생명공학에 의한 식품생산은 식량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권고사항**

- WHO는 JECFA와 JMPR간에 식품화학물질의 독성학적평가에 관한 공통 원칙을 갱신하고 조화하며 이 정보를 출판한다.
- FAO는 회원국에게 식이섭취조사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JECFA와 JMPR에서는 잔류물질의 식이섭취계산에 사용하는 방법을 조화해야 한다.
- 관련 전문가와 CODEX 위원회는 위해평가에 사용할 자료평가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FAO/WHO는 공동으로 위해평가중 불확정성(uncertainty)과 변이성(variability)에 관한 지침서를 개발한다.

**C. 영양, 환경 및 식품생산**

M. Wahlqvist 교수(Monash University, Australia)는 정책결정과 프로젝트 계획시 영양과 환경과학을 기초로 한 근거 확보와 식품다양성, 영양과 복지를 위해 사회·물리적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권고사항**

-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식량생산과 식품섭취행태와 건강이라는 결과는 과학적이며 근거에 입각한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세계식량공급 유지를 위해 국제기관, 법인단체, NGO, 공동체간에 협력해야 한다.

**6. 과학에 근거한 결정확보(의제 8)**

**가. 전문가자문과 위해분석**

Dr. J. Herrman(WHO)는 국제전문가위원회인 JECFA와 JMPR의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그동안 기여를 상기시키며 CODEX와 별도 기구임을 지적하였다. JECFA와 JMPR은 독립적이며 개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협의체로 정부나 연구소 또는 이해단체의 대표가 아니며 현재 사무국장이 전문가선정시 이해가 개입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고 향후 상기한 전문가는 확대되어야 하며 비용문제도 거론하였다.

**\* 권고사항**

- 국제전문가위원회인 JECFA와 JMPR과 같은 과학위원회는 CODEX에서 채택한 위해분석 원칙에 따라 평가할 책임이 있으며 CODEX 분과위원회는 화학물질 또는 생물학적제제 평가사안을 과학위원회에 회부할 때 그 목적을 명백히 제시한다. 위해평가정책 지침은 위해평가자와 위해관리자간에 FAO/WHO 협의체를 통해 지속해서 제공해야 한다.
- 위해평가자는 모든 불확정성과 변이성 원인을 확인하려고 할 때 불확정성의 정량 또는 정성평가를 제공해야 한다.
- FAO와 WHO는 과학적인 전문가선정시 독립적이며 투명한 위해평가과정, 작업절차와 이해개입 통제필요성 등 전반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

- FAO와 WHO는 위해평가과정이 독립적이며 투명하며 일관될 수 있도록 식품중 화학적·미생물학적 인자의 위해평가 전문가조직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여 전문가의 능력과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보장한다.

국과 국제수준에서 예방개념을 충분히 적용하고 판정될 수 있어야 한다.

- 국제과학자문기관의 운영시 높은 기준, 독립성, 투명성을 강조한다.
- 독성학적 우려인 역치개념에 대하여 추후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고 광범위한 전문가의견을 모아야 한다.
- CODEX 의사결정기준에 포함된 과학이외의 합법적인 요소를 긴급히 확인하자고 합의한다.

## 나. 적정보호수준결정 : 역치규정적용

A. Somogyi 교수(DG XXIV, EU)는 과학적 원칙에 근거한 식품안전결정이 되도록 과학기준이 인정되어야 하며 특히 특정 식품안전문제가 제기되지만 이사항을 평가하고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소비자보호조치로서 위해분석 과정에 예방조치를 도입해야 함을 설명하였다. 식품안전에 관한 적정보호수준결정이란 원래 과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나 일단 선택된 기준에 한해서는 일관되며 논리적이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생리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화학물질의 농도수준에서 독성학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역치규정은 실제 적용이 가능한 개념으로서 엄격한 조사가 요구되고 독성학적 시험 및/또는 성분 평가를 위한 우선순위 설정시 적절한 방법으로서 검토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 \* 권고사항

- 예방원칙이 위해분석시 필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 CODEX 일반원칙분과위원회는 "예방원칙"과 "예방접근방식"같은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포럼이다.
  - 1999년 4월에 있는 분과위원회에 할당된 과제가 적절하며, 혼란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CODEX 회원국과 관련 국제기구가 공람문서 CL 99/16-GP에 긴급히 대응한다.
  - 상기한 작업을 통해 향후 국가당

## 7. 조화, 상호인정 및 동등성(의제 9)

### 가. 조화/동등성/상호인정

Mr. D. Gascoine(AQIS)는 규격을 조화(harmonization)한다는 것은 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동일한 규격을 적용하는 타국가에서도 자유롭게 판매될 수 있도록 타국가에서 동일한 규격을 채택하는 것을 말하며 CODEX 규격은 건강상 위해에 대하여 조화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이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규격 및/또는 관련제도에 대하여 양방간에 자유로운 유통을 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말하며 다양한 접근방식에 대한 국제인정은 동등성원칙을 유도하게 되었다. 이 사항은 SPS 제4조와 TBT 협정 제2.8조에 제기된 사항으로 최근 CCFICS(CODEX 식품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분과위원회)와 총회에서 식품수출입검사 및 인증분야에서 위생조치 뿐만아니라 기술규정에 관한 동등성판정 지침을 작성하기로 한 사실을 소개하였다.

### \* 권고사항

-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하부조직은 CODEX 기준이 조화를 이룬 규격이 되도록 합의를 증진하고 모든 회원국이 상기한 규격을 수락하는 면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 동등성판정에 대한 지침개발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먼저 일반적인 개념정립을 하고 추후 검사 및 인증

제도와 같은 특정 분야와 식품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에서 작업을 실시하기로 한다.

## 나. 표시와 영양

Dr. Christine J. Lewis(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FDA, USA)는 식품표시 목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해야 하는 정보범위에 대해 발표하며 식품표시란 소비자와 생산업자를 연결시켜주며 제품판매에 도움을 주어 소비자를 허위제품으로부터 보호해주며 정보에 근거한 제품을 선택토록 하는 기준으로서 제품표시, 영양정보와 제품가공처리 관련 식품표시가 필요함을 발표하였다.

### \* 권고사항

-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식품 표시에 관한 일반원칙과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구체화하며 새로운 표시필요에 관하여 예견하고 제시하며 상기한 문제에 관해 모든 이해당사자간에 대화창구를 마련한다.
- FAO와 WHO는 표시우려사항을 다룰 때 표시와 기타 정보전달수단이 이용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소비자요구사항, 인식, 식품에 관한 신뢰와 동기, 영양 및 식품안전성에 관하여 전세계지역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 FAO와 WHO는 식품표시에 관한 이해와 필요, 소비자이용면에서 식품품질과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의 인지와 반응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실시한다.

## 8. 기술지원(의제 10)

Mr. G. Rios(Ministry of Agriculture, Chile)와 Mrs. K. Sinsakul(Secretary General, Thai Industry Standards Institute) 두 발표자는 국제품질과 안전성규격에 맞추어 국제시장으로 유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의 무역업체와 식품업

체가 직면한 문제를 부각시켰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의미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강력하고 일관된 조치를 필요로 하다고 주장하였다.

### \* 권고사항

- FAO와 WHO는 개발지역국가에 센터(Excellence Centre)를 설립하고 기량을 향상시켜 상이한 식품원칙에 관하여 인접국가의 훈련과 기술이전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 FAO, WHO, WTO와 기타 국제기구와 재원기관과 기증자는 개발도상국에게 기술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 a) 식품검사, 식품분석, 위해분석, HACCP, 식품검사 및 인증기술 및 식품안전품질제도 및 기타 유관분야에 관하여 개발도상국의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국가적 훈련을 지도
  - b) 효율적인 국가식품관리제도와 법령상 수출식품관리 및 인증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 및 기술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게 기술제공
  - c) 국가식품법령설정 및 개정시 WTO 협정의무를 준수하고 CODEX 규격·기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자문제공
- FAO와 WHO는 개도국내에 수출협약의와 연구를 담당하는 국가와 지역연구소, HACCP에 의거한 품질제도 도입, 위해평가연구 및 훈련규정 및 실험기관 이용등에 관한 개도국으로부터 자료를 확인하고 활용.

## II. 결 론

금번회의중 특이사항으로서 CODEX 의 의사결정근거로서 과학적인 근거확보를 위한 위해분석 논의에서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 이하 '예방원칙'이라 칭함)에 대한 것이다. 예방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EU 입장과 CODEX는 국제규격으로서 과학적이어야 하므로 예방원칙

이 불필요하다는 미국입장이 대립의 양상을 띠어 회의시작부터 끝까지 열띤 논의가 전개되었다. 또한 기존 국제식품규격작업에 대한 FAO 작업이 WHO에서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합의되어 향후 WHO의 작업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번 회의는 전반적으로 FAO, WHO, WTO, CODEX, 소비자 및 이해당사자의 필요를 확인하여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경우 식품안전 및 품질요소를 국제기준·규격으로 설정하여 위해관리자로서 역할을 강조하였고 FAO, WHO와 WTO에게는 기술지원자로서, FAO와 WHO 합동전문가협의체(JECFA와 JMPR)는 CODEX 기준·규격설정의 자문기구로서, 소비자 및 이해당사자간에 위해정보전달 강화라는 필요를 확인하였다. 향후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국내적으로 CODEX 협의체구성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부록 1

### 일반 권고사항 (General Recommendations of the Conference)

2000년대 국제식품무역에 관한 FAO회의(과학에 근거한 결정, 조화, 동등성 및 상호인정)는 1999. 10. 11~15,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되었으며 UN산하 FAO 회원국과 WHO 및 WTO에게 다음과 같은 일반권고사항을 알립니다.

1. 본 회의는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그동안의 작업에 감사를 표명하며 현행 CODEX 위원회 작업방향을 지지한다. CODEX 위원회에서 규격, 지침서 및 기타 권고사항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무역원활화를 기한다는 점에서 그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회원국은 CODEX 위원회의 작업에 적극적인 참여가운데 기여하기를

- 요청한다.
- 2.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작업시 소비자의 건강보호측면을 강조하면서 본 회의는 WHO에게 CODEX 위원회의 작업참여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한다. 본 회의는 FAO와 WHO에게 FAO/WHO 합동식품규격프로그램아래 공평한 관계를 맺는다는 측면에서 현행 관계의 검토를 요청한다.
- 3. 본 회의는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이 국가 또는 국제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회원국이 국제간 교역시 윤리규범(Codex of Ethics for International Trade in Food)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한다.
- 4. 본 회의는 CODEX 의사결정시 '과학의 역할과 기타 합법적인 요소 고려범위'와 '식품안전성 위해평가 역할 원칙'에 관한 해석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재확인한다.
- 5. 본 회의는 국가 및 국제규격 설정시 예방(precaution)개념이 위해분석시 필수요소로서 포함되어왔음을 인정하며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동개념을 논의하기에 가장 적절한 포럼이라는 것에 합의한다.
- 6. 정부는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 개발시 투명성을 증진하고 최선이 되도록 소비자, 생산업자 및 기관대표의 역할을 명백히 인정하여야 한다. 동일하게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CODEX 국가협의체 설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7. 효과적인 식품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자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의 최고정치·정책수준에서 경제적 보건의혜를 아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긴급한 필요이다. CODEX 업무를 시행할 때 또는 CODEX 기준을 검토하고 설정할 때 FAO, WHO와 재원기관은 개발도상국의 기반구조, 자원, 기술적·법률상 능력등의 특정 필요를 우선순위로 고려한다.
- 8. 국가는 자원을 증가하며, 정보기술제도를 개선하고 식품규제사항을 다루는 기술분과위원회와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식품규제제도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9. 회원국 정부는 모든 수출입식품과 자국 산 식품 및 거래되는 식품에 CODEX 규격이 적용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FAO, WHO, 정부기관 및 업체는 식품안전성과 품질에 관한 소비자의 정당한 우려사항을 알고 대응하며 식품관련정보가 서로 교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본 회의는 위해분석 자료가 인정되고 국가자료를 국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회원국 정부에서 식품안전연구를 지원하고, 식인성 질병을 감시 및 보고를 강화하며 연구협력 증진해줄 것을 권고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관할 연구소에서도 상기한 작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회원국 정부, FAO, WHO는 과학전문가의 선정, 작업절차 및 이해상충에 관하여 독립적이며 투명한 위해평가 과정이 되도록 전반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FAO와 WHO는 위해평가 전문가협의체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여 전문가평가에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13. FAO와 WHO는 FAO, WHO 및 유관기관에게 미생물 위해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JECFA와 JMPR과 유사한 국제전문가자문조직을 구성하여 한다.
14. 본 회의는 식품표시 및 다른 정보전달 방법을 검토하기 위하여 세계 각 지역으로부터 식품, 영양 및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요구사항, 인지도, 신뢰와 동기에 관한 FAO와 WHO의 정보 수집활동 전략을 지지한다.
15. FAO, WHO, WTO 및 기타 유관 국제기구는 재원기관과 협력하여 개도국에게 식품품질 안전성의 확보 및 관리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증가시켜 개도국으로 하여금 2000년대 국제식품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 부록 2

### 기타 권고사항 (Other Recommendations of the Conference)

#### A. 식품무역과 WTO 협정시행

##### 동등성, 조화

1. 동등성판정에 대한 지침개발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먼저 일반적인 개념정립을 하고 추후 검사 및 인증제도와 식품위생 조치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하여 작업을 실시하기로 한다.
2. WHO와 FAO는 공동으로 식품안전훈련·기술지원프로그램 추진시 동등성 결정과정분야를 연계하여 실시하여 동등성 결정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동시에 식품안전성 및 식품가공 기반구조의 향상을 기하여야 한다. 본 프로그램에는 동등성 판정과정,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평가, 동등성결정이 필요한 영역의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이 해당할 수 있다.

##### 기타 사항

3.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무역시 공정한 관행을 확보하며 식품의 국제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성분, 관능·안전성 기준에 관한 식품규격을 설정하며 식품품질 및 안전성의 문제와 억류·부적합 수준 뿐만아니라 부정불량식품의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하여야 한다.
4.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WTO 회원국은 CODEX 규격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특히 국제규격채택으로 인한 장벽이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사안(disincentives)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식품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CODEX 규격(표시포함)이 FAO/WHO 합동식품규격프로그램의 목표에 부합하기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제한적이거나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

## B. 과학의 역할과 기타 합법적인 요소

### 위해분석

- 제안된 규격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가마다 CODEX 기준 수락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자의 위해평가 수행 기준이 독립적이며 투명하며 타월해야 한다.
- 관련 전문가와 CODEX 위원회는 위해평가에 사용하는 자료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개발하여야 한다. FAO와 WHO는 위해평가의 불확정성(uncertainty)과 변이성(variability)을 확인하여 문서화된 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
- 국제 및 국가수준에서 위해평가 수행능력을 강화시키며 개발도상국은 이 분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받는다.
- CODEX 분과위원회는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평가하기 위해 과학위원회에 회부할 때 그 목적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논란소지가 많은 사안에 관하여는 적용해야 할 위해평가정책지침을 과학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과학위원회는 평가근거를 명확히 설명할 책임이 있다.
- FAO와 WHO는 식품중 화학적 미생물학적 제제에 관한 위해평가 자원을 증가시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제기구마다 식품안전성 관련 위해분석용어를 조화시켜야 한다.
- WHO는 JECFA와 JMPR간에 식품화학물질(예, 천연물질, 첨가물, 오염물질, 잔류농약, 잔류수의약품)의 독성학적 평가에 관한 모든 공통원칙을 갱신하고 조화시켜야 하며 이 정보를 단일문서로 발행하도록 한다.
- 정부에서 위해분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며 그것은 위해평가지 대학을 개입시키거나 국가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설정 담당국 사이에 공식적인 의사전달 및 협력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가능하다.
- CODEX 사무국은 개발도상국의 식이섭취량 자료를 근거로 기존기준(limit)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그 영역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FAO와 WHO는 위해분석 결정 뿐만 아니라 영양상태증진이라는 측면에서 CODEX와 국가에서 필요한 식이섭취량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한다.

- FAO와 WHO 과학위원회에게 과학자를 보내는 회원국은 그 전문가가 국가에 기여도를 인정하며 해당전문가의 작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담당기관에서는 보수지급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회원국은 FAO/WHO 과학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문을 받아들이고 그 평가결과가 회원국에게 유용할 수 있는 방향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C. 식품안전·품질규정 및 집행

### 법령(regulation)

- 국가 및 국제 식품규제기관은 목표를 설정하는 기관으로서 안전한 식품생산에 관한 전반적인 1차 책임이 있으며 담당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수단을 개발할 책임이 있다.
- 국제기구는 안전한 식품 생산방법으로서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모범농업규범, 농작물과 해충관리)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모범제조규범)를 강력히 권고한다.
- CODEX 위원회는 CODEX 식품위생의 일반원칙에서 설정한 HACCP 원칙을 지속해서 검토하며 동원칙의 적용을 권장해야 한다. 본 원칙은 모든 식품에 적용하며 사료도 포함된다.

### 투명성 및 참여

- 해당 국가정부기관은 생산업자, 가공업자 및 소비자에게 식품안전 및 영양 문제를 설명하는 교육정보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 정부는 국가 및 국제식품정책을 설정할 때 투명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명백히 인정하여야 한다. 동일하게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국

가CODEX협의체가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타 최근 식품안전·영양문제*

22. 최근 식인성 문제에 관한 국제연구가 추진되어야 하며 식인성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중요 요소로서 식품위생의 일반원칙 뿐만아니라 HACCP 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한다.
23. 최근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 교육 및 정보전달이 활용될 수 있다.
24. FAO와 WHO는 회원국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식품안전·품질문제의 현상태와 범위를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관련 질병을 세계적으로 등록사안 뿐만아니라 그 질병의 원인과 식품관리소홀 사유를 확인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25. FAO와 WHO는 정부 및 연구소와 공동으로 과학적인 식품섭취지침서 (food-based dietary guidelines) 를 개발하고 이 자료가 의료계, 보건전문가, 영양학자 및 국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D. 기술지원, 교육 및 연구**

*개발도상국의 필요충족*

26. 선진국에 의한 지원은 시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원결과가 기간별로 평가가 가능하게 하여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실효성이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27. 기술지원은 국가역량과 필요를 결정하기 위한 국가분석을 근거로 실시해야 한다. 그 프로그램을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며 국가프로그램에는 모니터링 실시 및 진행평가와 최종 평가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28.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를 통고하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보강하기 위하여 타 국가의 통고문을 수령하고 배포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국가분야별로 의견을 수령하며 타국가로의 통보문을 발행하고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의견수렴을 원

활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29. 개발도상국은 해당제품에 관해 이해당사자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 제도는 중앙정부당국이 개입하여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규제정보를 제공하며 수출국으로서 수입국에 처음접근하며 그 결과 협정체결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 FAO, WTO 및 WHO는 지역 및 국가훈련으로 예를 들면 워크숍과 세미나 또는 전자전달 방식으로 2000년대 기본 입장에 따라 적정보호수준, 위해분석, 위생조건 개선 및 동등성설정에 관해 개발도상국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31. 국제식품무역에 장벽이 되는 품질문제를 최소화하고 보류나 부적합수준을 낮추고 식인성위험과 질병이 없도록 FAO는 기타 국제기구와 선진국과 공동으로 UR 협정정신을 토대로
  - a) 개발도상국의 정부와 업체에게 효과적인 국가식품관리제도 즉 법에 근거한 수출식품관리 및 인증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미 실시했던 기술지원을 증가시킨다.
  - b) 개도국의 식품검사 및 인증분야의 인력을 훈련하고 식품안전품질제도의 훈련관을 훈련한다
  - c) 효과적인 국가식품관리제도와 법에 근거한 수출식품관리 및 인증프로그램을 확보하고 필요한 분석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강화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에게 지원을 늘린다.
32. FAO, WHO, WTO와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이 식품안전품질의 국가관리제도를 설립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립방안을 고려한다. 기술지원에는 기본 식품위생 뿐만아니라 모든 식품관리에 관한 직원훈련도 해당된다. 가능한한 훈련프로그램은 국가언어로 수행되어야 한다.

## E. CODEX 작업 참여

33. FAO/WHO/CODEX는 가능한한 재정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CODEX 작업에 충분히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34. 개발도상국에서 CODEX 분과위원회 개최여부와 기타 지역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여 타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CODEX 분과위원회 개최시 작업반을 같이 열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 F. 일반 훈련 확대

35. 정부, 업체, 농민, 소비자는 식품의 안전한 생산과 취급 특히 HACCP 적용 또는 유사제도에 관한 적절한 훈련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여야 한다.
36. 국제기구와 정부는 업체와 소비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기술을 안전하게 적용하기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효과적인 식품안전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도록 훈련된 검사원, 기술분석자, 숙련된 홍보요원 및 행정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기반구조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37. 훈련의 양과 질이 필요조건에 충분히 적절히 부합되도록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 정보교환

38. FAO와 WHO는 재정적 압박가운데 있으므로 HACCP, 위해분석, 위해평가와 같은 기술활동등의 식품안전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역학감시를

수행하는 국가에게 전문가를 지원해줄 수 있는 지역센터설립을 강구하여야 한다.

39. 개발도상국은 식품품질 및 안전성관리 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위해평가, GMP, GMO에 관한 안전성자료, 식품첨가물사용, HACCP 등의 식품품질 및 안전성 관리사항에 관하여 가장 최근 과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계 각 지역마다 웹사이트를 운영할 식품품질안전정보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G. CODEX 과정(CODEX PROCESS)

40.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특히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국가로부터의 서면의견등 서면의견을 CODEX 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의장은 CODEX 회의이전에 받은 모든 서면의견을 회의용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결정사항을 보고서에 적절히 기록해야 한다.

## H. 조정(COORDINATION)

41. 국가위원회는 국민, 학계, 생산업자, 수출업자, 업계 및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들은 계획을 수립하며 모니터링 및 평가등에 관한 연간 작업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한다.
42. 각 위원회의 활동소개를 하고 그 활동 결과를 알려서 그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국가재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